

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3. 9. 10.(화) 10:00~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72	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	2
73	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	5
74	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
〔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8. 27.
- 나. 제출자 : 이성복, 강창남, 안철우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9. 0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지자체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보도(步道)는 국토해양부의 「보도설치 및 관리지침」에 따라,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,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 신속한 보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
-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, 또한 보도정비·보수 시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- (2) 보도정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 -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립된 보도의 정비계획
 - 보도정비·보수 매뉴얼과 공사관리,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
 - 포장재 선정 등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
- (3) 보도공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 - 보도공사 예고제와 실명제 시행
 - 보도공사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
 - 신속한 정비·보수를 위한 보도블록의 확보와 보관
- (4) 보도의 정비기준 규정(안 제6조)
 - 보도정비·보수구간 선정의 우선순위 수립
 - 보행 장애물제거 및 보도턱 없애기
 -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 시행금지
- (5) 보도블록의 재활용 규정(안 제7조)
 -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보관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
 - 재활용가능 보도블록의 공공사용 및 무상제공
 -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 개설·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은 물론, 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,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 보도정비·보수에 발생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- 5. **토론 요지** : 해당없음
- 6. **수정안 요지** : 해당없음
- 7. **심사 결과** : **원안가결**
- 8. **소수의견 요지** : 해당없음
- 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〕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8. 27.
- 나. 제출자 : 조기원, 이성복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9. 0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생산적 복지 확충,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,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(2)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(3)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(4)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(5)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촉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(6)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(7) 협동조합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「협동조합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8. 2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8. 2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9. 0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,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)
- (2)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위원명칭 변경, 조직개편사항 반영함
(안 제3조)
 - 위원정수 확대 : 15명 내 ⇒ 20명 이내
 - 명칭 변경 : 거창교육청교육장 ⇒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
재난관리과장 ⇒ 안전총괄과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영관급 이상 예비역 군인, 한국전력 거창지점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확대 필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늘리고,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나.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